

2019 해외안전여행 길라잡이





1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

| 출국 전 준비 |
| 여행경보제도 |

|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안내 |



Contents

1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

- 출국 전 준비 04
- 여행경보제도 05
-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06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안내 16

2 안전한 여행

-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22
- 영사콜센터 / 맞춤형 SMS 서비스 33
- 긴급상황 발생 시 34
(신속해외송금, 긴급여권발급, 3자통역서비스)
- 영사조력범위 36
- 방문국에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38

3 안전한 귀국

- 귀국 시 특히 주의할 사항 42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43
- 여행 후 질병관리 44
- 출입국 시 외환 신고 46



출국 전 확인사항

1. 사전에 여행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하려는 국가의 문화나 관습, 치안상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세한 정보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나 해당국 정부기관(주한대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사콜센터나 방문국(지역) 소재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연락처를 미리 확인한다.



영사콜센터

+822-3210-0404

3.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해외 연락처를 꼭 남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일정, 여행일정, 체류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 가족들이 소재와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4. 방문국(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확인하고 미리 대비한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

5. 해외안전여행 앱을 내려받고 모바일 동행서비스에 가입한다.

모바일 동행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란?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 필요성 신중검토

적색경보

철수권고 · 긴급응수가 아닌한 철수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

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특별여행
주의보

단기적인 위험 상황에 대해 발령하며,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
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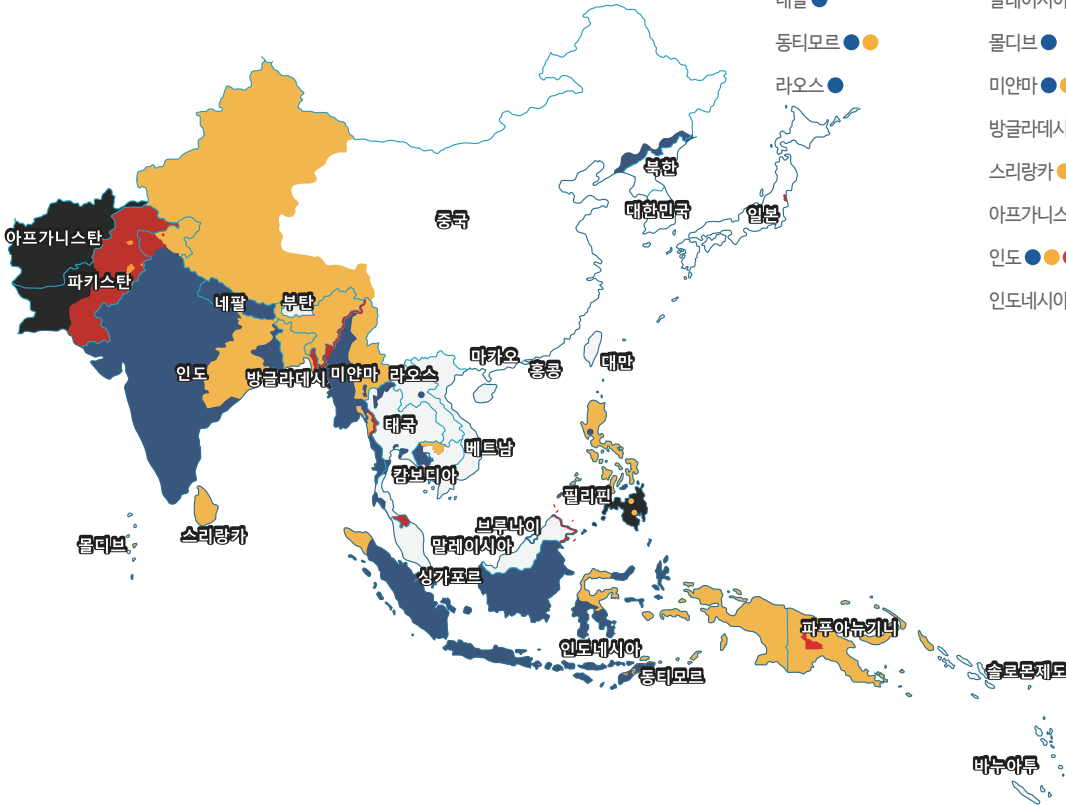
단기적인 위험 상황에 대해 발령하며, 흑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아시아·오세아니아)

발령국가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 | | | |
|--------|----------|----------|
| ● 네팔 | ● 말레이시아 | ● 일본 |
| ● 동티모르 | ● 몰디브 | ● 중국 |
| ● 라오스 | ● 미얀마 | ● 캄보디아 |
| | ● 방글라데시 | ● 태국 |
| | ● 스리랑카 | ● 파키스탄 |
| | ● 아프가니스탄 | ● 파푸아뉴기니 |
| | ● 인도 | ● 피지 |
| | ● 인도네시아 | ● 필리핀 |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북미·중남미)



발령국가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 | | | |
|------------|---------|------------|
| 과테말라 ●● | 아르헨티나 ● | 콜롬비아 ●●● |
| 니카라과 ● | 아이티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도미니카공화국 ●● | 에콰도르 ●● | 파나마 ● |
| 멕시코 ●● | 엘살바도르 ● | 파라과이 ●● |
| 베네수엘라 ●●● | 온두라스 ●● | 페루 ●●● |
| 볼리비아 ●● | 자메이카 ●● | |
| 브라질 ● | 코스타리카 ● | |

※ 미국과 캐나다에는 현재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유럽·CIS)

발령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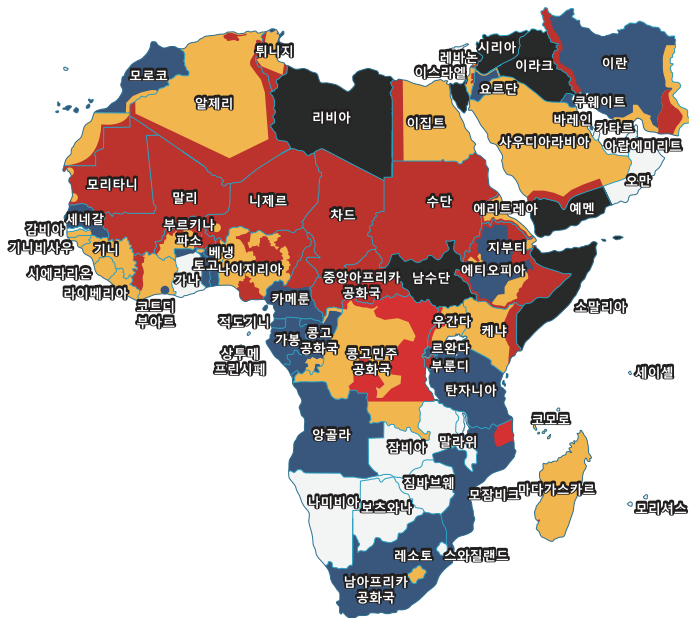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 러시아 ●●
- 영국 ●
- 투르크메니스탄 ●●●
- 벨기에 ●
- 우크라이나 ●●
- 프랑스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조지아 ●
- 아르메니아 ●
- 코소보 ●●
- 타지키스탄 ●●
- 아제르바이잔 ●
- 터키 ●●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아프리카·중동)

(2019년 6월 기준)



발령국가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가봉 ●	바레인 ●	이스라엘 ●●●●●
감비아 ●	부룬디 ●	이집트 ●●●●●
기니 ●	부르키나파소 ●●	적도기니 ●
기니비시우 ●	사우디아라비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지부티 ●●
남수단 ●	소말리아 ●	차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수단 ●●●●●	카메룬 ●●
니제르 ●●	시에라리온 ●	케냐 ●●
라이베리아 ●	시리아 ●	코트디부아르 ●●●
레바논 ●●●●●	알제리 ●●	콩고 ●●
레소토 ●	앙골라 ●	콩고민주공화국 ●●
르완다 ●●	에리트레아 ●●	쿠웨이트 ●
리비아 ●	에티오피아 ●●●	탄자니아 ●
마다가스카르 ●●	예멘 ●	튀니지 ●●●
말리 ●	요르단 ●●	
모로코 ●●●●	우간다 ●●●	
모리타니 ●●	이라크 ●	
모잠비크 ●●	이란 ●●●	

Q&A

세계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닌 안전씨.
그동안 너무 편하고 재미있는 관광지만 즐겨
다녔는데요. 이번에는 사막으로 가보려 합니다.
모래바람과 밤새 텐트 속에서 싸우는 극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안전씨!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사막의 매력도 보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고민입니다.

Q | 안전씨가 계획한 사막 여행 중 방문하면 안 되는
곳은?

- ① 미국 모하비 사막
- ② 이집트 사하라 사막
- ③ 예멘 알 아브르 사막
- ④ 중국 고비 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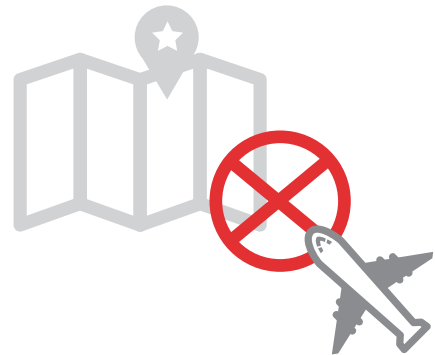
A | 정답은 **3번!**

예멘은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여행금지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필리핀 일부 지역**의
여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들 7개 국가·지역을 정부 허가 없이 무단
여행하면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안내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기내 위탁수하물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폭발 장치(뇌관, 신폴, 도화선, 발파캡 등)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 독극물, 의료 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성냥,ライター, 인화성 가스(부탄가스 등), 인화성 액체(휘발유·페인트 등),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내 위탁수하물



창·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팅,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팅,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총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 심류 /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팬치류 / 가죽몰이 봉 등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안내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기내 ☐ 위탁수하물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비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멍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 분무 · 젤류용품의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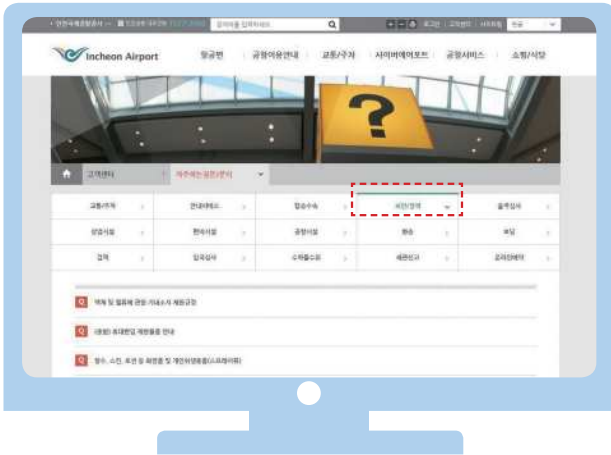
물 · 음료 · 식품 · 화장품 등 액체 · 분무(스프레이) · 젤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출처 : 인천국제공항

01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

“ 반입금지물품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www.airport.kr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문의

보안/검색

2



안전한 여행

|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

| 영사조력범위 |

| 영사콜센터 / SMS서비스 |

| 방문국에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

| 긴급상황 발생 시 |

· 신속해외송금, 긴급 여권발급, 3자통역서비스



테러/폭발이 일어났을 때



광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는 테러 공격 대상이 되기 쉬워요!

주변 안전시설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화단이나 차벽 등 테러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주변으로 이동하세요!

생화학 테러 발생 시에는 코와 입을 손수건 등으로 가린 후 신속히 현장에서 벗어나세요!

폭탄 테러 발생 시에는 바닥에 엎드려 팔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세요!

납치를 당했을 때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여행 전 치안 시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주세요!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범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CCTV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사시 긴급 연락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체포 · 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도난 · 분실을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 옷에 이물질 묻히기
- 동전 떨어뜨리기
- 길 묻기
- 돈 구걸하기 등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p.34)**를 이용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 시위 현장이나 군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여행 동행인 : ①현지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을 신고하고 ②현지 기관에서 사망진단서 및 사망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사망자 가족 : 사망 발생 지역 공관 영사로부터 긴급 여권, 도착 비자 등 가족 방문 관련 사항 및 장례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세요.

※ 재외공관 신고사항 :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및 유해 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 등

우리나라 공관이 지원하는 영사서비스

1 국내가족의 현지 방문 지원

- 출국을 위한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발급을 지원
- 현지에서 상황 설명, 현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면담 주선

2 장례 관련 절차 지원

- 관할 경찰서에 시신 인수 관련 협조 요청
- 현지 장례 및 화장 등 시신처리 대행업체 소개
- 납골 단지 또는 시신의 이송 관련 수속 및 절차 지원
- 사망 관련 서류에 대한 신속한 공증

3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의료기관 안내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병원 등)

낯선 사람의 요청을 받을 경우



낯선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긴급한 용무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을 전해달라고 말할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수하물에 마약을 은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수하물을 잘 챙기셔야 해요!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마약사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미리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꼭 소지하세요!

- 특히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 등 마약취약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마약과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정량 이상의 마약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중국 형법 제347조).

만약 귀하께서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 되었을 경우 마약 운반으로 간주하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 공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지진 발생 시 : 즉시 몸을 바닥에 엎드려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세요!

해일 발생 시 :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태풍·호우 발생 시 : 큰 나무를 피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하세요!

영사콜센터

-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관련 사항은 물론 여권, 해외이주, 영사확인 등 각종 영사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서비스	
국내(유료)	해외(유료)
02-3210-0404	+822-3210-0404

국가별 맞춤형 로밍문자 메시지

- 외교부는 로밍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우리 여행객에게 해외안전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로밍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해외 도착 즉시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는 물론 방문국 여행 경보 발령 현황, 질병 정보 및 유의사항, 치안 상황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여행경비를 현지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 ①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신속해외송금 신청
 - ② 우리은행 · 농협 · 수협에 신청금액 입금
 - ③ 현지 공관은 영사콜센터를 통해 입금 확인 후 긴급경비 지원
-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공관에 방문하여 긴급경비 수령 가능

지원제외대상

-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송금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상업적 목적의 송금지원, 정기적 송금 요청 등

지원 한도

- 원칙적으로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최고 3천불까지 가능
- ※ 재외공관의 외화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 ※ 재외공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천불 초과 금액 송금 지원 가능

해외에서 여권 분실 또는 훼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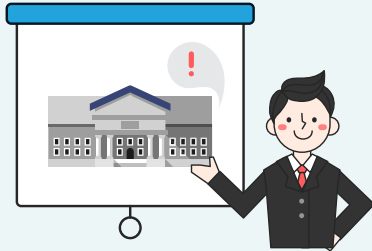
- ①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② 현지 우리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 ※ 필요서류 : Police Report(여권 분실 증명서), 신분증, 여권발급수수료, 여권용 사진 2매(3.5x4.5cm, 촬영 6개월 이내, 흰색 무배경, 귀 부분 노출)
- ③ 여권에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가 찍힌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여권 신원정보란에 얼룩이 묻어있거나 사증란이 찢어져 훼손된 경우, 해외에서 출입국 심사 시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자 통역서비스

-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긴급상황 시 현지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통역서비스를 제공
 - ※ 2019. 8월 중 베트남어 통역서비스 추가 예정
- 지원범위 : 출입국 · 세관심사, 병원 응급상황, 경찰서 분실물 신고 시 등

영사조력범위

영사가 할 수 있는 일



- 현지 경찰신고 방법 안내
-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소개
- 현지 사법체계나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협조 요청
- 국내 연고자 연락 및 국내 연고자의 현지 방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

영사가 할 수 없는 일



- ✗ 심야, 새벽, 휴일 시간대에 무리한 민원 해결 요구
- ✗ 비용(의료비, 변호사비 등)지불, 지불 보증
- ✗ 항공권, 숙소 예약 대행
-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사법권 행사
-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 보험사와의 보상 교섭
- ✗ 수행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협상
- ✗ 현지 수감자보다 우대받도록 압력 행사
- ✗ 범죄피해 징후가 없는 단순 연락두절자의 소재 파악

방문국에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상주하는 우리 재외공관이 없는 아래 국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국가를 겸임하거나 관할하는 인근 국가 소재 우리 재외공관에 연락하세요(0404.go.kr).

가. 아주지역

국가명	겸임 대사관	국가명	겸임 대사관
나우루	피지	사모아	뉴질랜드
니우에	뉴질랜드(관할)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마셜제도	피지	쿡제도	뉴질랜드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피지
몰디브	스리랑카	통가	뉴질랜드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피지
부탄	방글라데시	팔라우	필리핀

나. 미주지역

국가명	겸임 대사관	국가명	겸임 대사관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쿠바	멕시코(관할)

다. 중동지역

국가명	겸임 대사관	국가명	겸임 대사관
모리타니아	모로코	시리아(여행금지국)	레바논

라. 유럽지역

국가명	겸임 대사관	국가명	겸임 대사관
라트비아	스웨덴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관할)
룩셈부르크	벨기에	산마리노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르메니아	러시아
모나코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안도라	스페인
몰도바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마. 아프리카지역

국가명	겸임 대사관	국가명	겸임 대사관
감비아	세네갈	상투메프린시페	가봉
기니	세네갈	세이셸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세네갈	소말리아(여행금지국)	케냐
나미비아	앙골라	스왓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수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말라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말리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모리셔스	케냐	차드	카메룬
베냉	가나	카보베르데	세네갈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케냐
부룬디	르완다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토고	가나



안전한 귀국

- | 귀국 시 특히 주의할 사항 |
-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 | 여행 후 질병 관리 |
- | 출입국 시 외환 신고 |



귀국 시 특히 주의할 사항

① 육가공품 반입은 금물!

폐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귀국 시 다시 한 번 소지품을 살펴보세요!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소시지나 육포, 순대 등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축산가공품에서도 수 개월 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축산물이나 육가공품을 가지고 신고 없이 귀국하는 경우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적발 시 750만원, 3차 적발 시 무려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② 대마류 반입은 안돼요!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등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에 대마 초콜릿이나 젤리를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있다면 국내 반입은 물론 해외에서도 구입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해외 사용·소비용 해외 친지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불까지**이며, 국내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불까지**입니다.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총 가액이 600불을 초과하면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관세정보는 관세청(www.customs.go.kr)에서 확인하세요!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후 질병 관리

① 귀국 시 공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했다면 입국 시 검역대에서 노란색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는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www.cdc.g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339),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여행한 곳이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는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꼭 신고하세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제출하세요!

② 귀국 후

귀국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신고하시고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귀국 후에도
처방기간까지 복용해야 해요!

해외여행 후 1달 동안 헌혈하시면 안 돼요!

더 자세한 질병정보는 질병관리본부(www.cdc.go.kr)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입국 시 외환 신고

외환신고는 휴대물품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해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시

• 비거주자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일반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직전 입국 시 휴대하여 들어온 지급수단 혹은 카지노 수입
반출시 ▶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허가 필요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한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

- 여행경비 미화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필요
- 물품거래대금, 자본거래대금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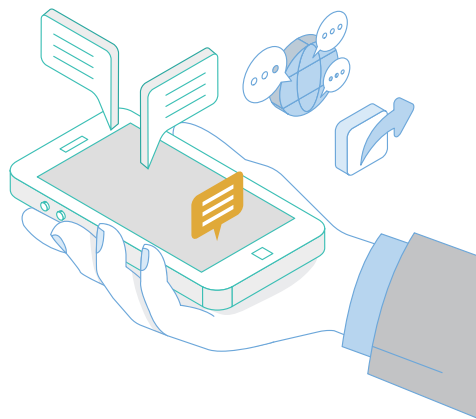
• 국민거주자

-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 허가에 수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일 전에 미리 허가 받을 필요
- 직전 입국 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 시 휴대반출 가능

입국 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한 채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고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원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허가 받을 필요)



memo
